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 패키지 자원사업 모집공고

2024. 6.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 서비스 효율화 작업과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1. 사업 개요

- (모집기간) 2024. 6. 4(화) ~ 6. 24(월)
- (지원기간) (선정일) 협약 체결일부터 ~ 2024. 10월
- (지원규모) 22개 업체
- (지원내용)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 패키지

■ 사업 목적

○ 사업 추진 배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가계의 소비위축으로 고비를 맞았지만, 경기도의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기대되는 바, 이에 발 맞추어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인 판로개척을 지원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중요성

새로운 판로개척 지원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고용유지

및 신규 직원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2.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지원한도 : 1개 업체당 최대 300만원(보조금 210만원, 자부담 90만원)
 - 업체당 소요비용의 70%이내 최대 210만원 지원
 - 부가세 및 초과비용 업체 부담
- 패키지 항목 최대 2개까지만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 구성

지 원 항 목	온라인 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홍보비 지원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기획전 등 제품의 전자 카달로그 (영문, 한글)
	오프라인 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홍보용 물품 제작 지원 판촉물품, 제품의 신규 패키지 제작● 오프라인 광고비 지원 미디어 플랫폼 광고 제작과 광고료●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관련 비용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제작, 시설구축, 홍보비
	디지털 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기기 디지털 광고보드, 전자메뉴판, 디지털 카달로그, LED 영상전광판 사이니지

3.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자로서 제품 및 서비스 아이টে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 단, 사업자등록증 기준 2024년 창업자 제외
 - 2022~2024년 경기도 및 시, 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동일 혹은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자 제외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 ※ 용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신청기간

- 2024. 6. 4(화) ~ 6. 24(월) (*기한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메일(gg-kfme@naver.com)로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일체 접수
 - 접수 시 메일 제목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 - 신청업체명]
 - 첨부파일명 예시 : 신청업체명_지원신청서, 신청업체명_사업계획서
 - 제출 형태 : PDF파일로 제출
(신청서류 미제출과 부실 제출의 경우 접수 불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서식1]
- 2) 사업계획서[서식2]
-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3]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 증명원 1부
- 6) 소상공인확인서 1부 (2024년 5월 이후 발급분)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7) 신청내용 견적서 1부

■ 문의처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의정부 사무실 (전화: 070-4827-4420)

4. 지원 규모 및 선정

■ 지원규모

- 경기도 내 소상공인 22개 업체 (예산 범위 내 지원)
- 본 지원사업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지원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함

- 지원 대상자 선정
 - 1) 1차 심사위원회 신청업체 서류 평가
 - 2) 2차 심사위원회 선정업체 심사 평가
 - 3) 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 점수가 높은 신청업체 순으로 대상업체 22개사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1) 2024년 7월 중 예정
 - 2) 지원대상 선정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문자,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

5. 지원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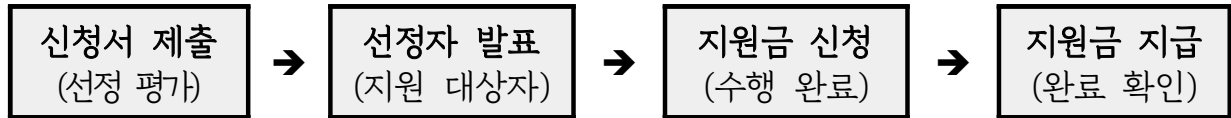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지방세 체납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 [별표1] 확인

6.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선정평가 후 선정통지를 받으신 분이 사업추진 및 종료 후 지원금 신청 및 완료 보고



- 단계별 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6월)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연합회로 접수(이메일)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부실 시 심의, 선정 대상 제외 및 감점 가능
	↓	
	선정평가 및 지원 결정 (6~7월)	·1차 신청업체 서류 검토 ·2차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후 선정 및 금액 결정
	↓	
선정 발표	대상업체 통보 (7월)	·대상업체에 선정결과 통보 ·협약체결 ·대상업체는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
	↓	
지원금 신청 및 완료 보고	사업수행 (8월~10월)	·지원금에 부합하는 자부담금 연합회 납부 ·현금 입금(계좌이체 필수, 카드결제 불가)
	↓	
	완료보고서 제출 (10월)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신청서, 지출증빙자료 제출 ·거래명세서 등 추가 요청 시 자료 제출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10월)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지원금 외주업체 지급

*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및 동시 진행될 수 있음.

7.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1) 심사위원회 운영(내·외부 심사위원 7인)
- 2) 1차 신청업체 서류 평가, 2차 선정업체 심사 평가
- 3)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정성적 평가 득점순으로 선정.
- 4) 평가항목 : 정성평가(50점) + 정량평가(50점)
 - 정성적 평가 : 참여의지, 사업 역량, 사업성, 매출증대 계획 등
 - 정량적 평가 : 창업 업력, 매출액, 종업원 현황 등
- 5) 지원대상업체 중 사업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후보순위업체 선정

8. 기타사항

-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 불이행 시 협약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함
-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 당 기관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지원,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

[붙임]

- [별표1]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제외대상 업종
- [서식1] 지원신청서
- [서식2] 사업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표1]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